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3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진료비용의 부담)”을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신설> ①·② (생략)	제11조(진료) ① 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연 락 처	(044) 202 - 5693